

축산업 등록제

Livestock Industry Registraion System

강 형 수*
Kang, Hyoung Soo

1. 머리말

과거 우리나라의 축산은 경종농업에 필요한 축력과 퇴비를 얻기 위하여 농가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식품소비의 패턴도 채식위주에서 육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축산업의 형태도 크게 달라졌다. 축산업도 부업형태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농가의 주요 소득 원으로써 확고한 위치를 갖고 성장·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축산업은 대부분의 농업 분야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업 조수입에 대한 축산 조수입 비중이 1970년도에는 5.6%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 12.1%, 1990년 17.4%, 1995년 24.9%, 2000년 13.1%, 2003년 21.4%로 크게 늘어나 전체 농업중에서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하는 축산업도 과거에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가축 사육규모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없어 때로는 공급부족으로 축산물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고, 때로는 사육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급락하는 등 수급불균형 현상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UR이 출범한 90년대 중반부터는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훨씬 심화되었다. 현재의 축산업의 이러한 시련을 딛고 달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도전을 극복한 축산업계의 경험은 앞으로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데 악성 가축질병 방역, 환경부담의 완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고에서는 축산업이 당면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도입 배경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환경과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가에 비해 환경, 위생시설, 제도적 측면에서 크게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kangsoo@maf.go.kr)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와 밀집 사육 증가에 따라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국토환경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가축분뇨는 연간 4천 9백만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은 환경문제와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이 지속 발전하려면 환경과 안전성, 가축방역 등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대응하여 가축방역과 환경문제,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축산업등록제가 마련된 것이며, 축산관련 단체 및 축산농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방식으로 2002년 12월 26일 개정된 축산법을 통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이 2004년 2월 14일 개정되었다.

축산업 등록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다. 1983년도 말 돼지 사육두수의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가경영이 불안하고 소득이 격감하게 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보호육성, 돼지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사육동향에 대한 정확한 관측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도에 축산법을 개정하여 양돈·양계를 대상으로 사육규모에 따라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1997년 7월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한 등록제는 그 유용성이 낮아지면서 1999년 1월 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즉 양돈업은 허가 상한선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양돈업의 규모화 및 수출물량 확대를 저해한다는 문제를 없애고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축산업 경영을 위해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등록·허가제는 수급조절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 추진중인 등록제는 가축방역, 안전성, 친환경 축산 등 선진축산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입취지가 서로 다르다.

축산업 등록제는 그 대상이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 국한되어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관개배수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나, 이하에서는 설명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이 제도가 일정수준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하게 되어 있어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관개배수와 꼭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축산업 등록제 주요 내용 및 외국의 사례

가. 축산업 등록제의 주요 내용

1) 등록대상 및 등록기한

축산업 등록의 대상은 부화업(인공부화 시설로 닭 및 오리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하는 업), 계란 집하업(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 종축업(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돼지·닭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비롯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상, 돼지는 50㎡ 이상)인 농가(또는 법인)이다. 대상농가는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 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휴업·폐업·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가축사육 시설의 면적이 등록을 한 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종축업·부화업 신고를 필한 경우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계란집하업 경영자는 2004년 6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쳤으며, 가축사육업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의무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종돈의 개체별 표시의무,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부 고시 2004-8호(2004.3.17)」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정 가축사육 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축종별로 구분하여 두당 소요면적을 살펴보면, 한·육우의 경우 비육우를 기준으로 방사식(축사내부를 칸막이로 구분하고 소를 칸내에 풀어놓고 키우는 형태)은 7.0㎡, 계류식(소를 축사내에 계류하여 사육하는 형태로서 운동장 불필요)은 5.0㎡이다.

젖소의 경우 착유우를 기준으로 깔짚(젖소를 깔짚우사 내에서 방사식으로 사육하는 형태)은 16.5㎡, 계류식(경산우를 사료급여·사착유 및 약천후 시에 계류실우사에 계류사육하는 형태)은 8.4㎡, 후리스틀(주로 착유우를 수용하는 형태로 개체별 우상을 설치하여 사료섭취·음수 및 휴식을 자유롭게 방사식으로 사육하는 형태)은 8.3㎡이다.

돼지의 경우 비육돈을 기준으로 0.9㎡이다.

닭의 경우 산란계는 케이지가 0.042㎡/수, 평사가 0.11㎡/수이며, 육계는 케이지가 0.042㎡, 평사(개방의 경우)가 0.066㎡이다.

3) 등록내용 및 벌칙

주요 등록사항은 농가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시설(동수, 면적 등), 사육두수 등 주로 축산농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등록대상 농가(또는 법인)가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등록변경사항 등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나. 외국의 사례

1) 유럽연합

유럽에서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하여 1990년대 후반 들어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왔다.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등으로 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육밀도가 ha당 1.4가축단위 미만일 경우 등 가축 사육밀도를 낮추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네덜란드

1950년도에 처음으로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한 후 1970년대 모든 소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19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가축분뇨발생량을 규제하기 위해 농가별로 농경지 면적, 가축 두수, 가축의 품종 등에 대해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1980년대 단위농지 면적에 대한 분뇨 생산·이용 허용량 제한을 시작으로 1996년 이후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미네랄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을 농가별로 제한하였으며, 미네랄 사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3) 벨기에

모든 가축을 출생에서부터 도축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을 실시(SANITEL: Special Sanitation System)하여 식품오염이나 질병 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소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돼지, 면양, 산양 및 가금류 등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모든 가축(소는 개체별, 기타가축은 축군별)으로 출생후 7일 이내에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 영수증과 사료검사 성적서 등은 바인더에 편철하고, 농장에서는 보관·관리가 의무화 되었다. 또한 SANITEL에 등록된 가축은 등록부와 함께 소는 주황색 2개,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은 축종별로 주홍, 연두, 청색, 녹색 1개의 이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축주는 지역담당 수의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SANITEL에 의하여 축종별 농장수와 가축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SANITEL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이를 발견시 정부당국에 의해 압수·폐기되며, 등록내용이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담당 수의사의 면허정지도 가능하다. 또한 이표 부착거부 등으로 이표가 없을 경우 법정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농가에서 돼지·닭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기 원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한 환경자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도록 한다.

가축분뇨·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며, 가축축산농의 사육규모 상한을 젓소 100두, 육우 300두, 모돈 300두, 가금 70천수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4) 영국: Cattle Identification & Registration

1998년부터 모든 소사육 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Passport를 발급하고, Passport가 없는 경우 가축의 이동·판매·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젓소는 출생후 36시간, 기타 소는 20일 이내 이표부착을 의무화하고 2개 이표 중 하나는 "UK"를, 다른 하나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한 개의 이표라도 없는 소는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이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28일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한다. 모든 소는 생후 7일 이내에 Passport를 발급 받아야 하며, Passport가 없는 소는 이동, 판매, 도축이 제한되며, 소가 판매될 때에는 Passport를 소 구매자에게 넘겨야 한다.

Passport 기록은 10년동안 보관하고, 판매와 관련된 사항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의 규제를 실시하는데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 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 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를 실시한다.

5) 덴마크

6개월 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를 실시하며,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농가별 축산 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사용량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었다. 면적당 가축사육두수는 ha당 모돈 5.2두, 비육돈 17.6두, 젖소 2.3두이다.

6) 프랑스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며,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 기록부 보관 등을 의무화 하였다.

7) 대만

1997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축목업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목업 경영자중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하여금 축산사업장을 등기토록 1998년 8월에 의무를 부과하였다.

등기요건은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직업학교 이상의 수의, 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을 수료(1개월 이상)한 자 또는 2년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기절차는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시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으며, 주관기관은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를 교부한다. 또한 등기사항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기타 위생관리를 위하여 축목장은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4. 축산업 등록제 추진현황

2004년 12월말 기준 27.0%에 불과했던 등록실적이 그동안 농림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와 축산관련 단체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5. 6. 12 현재 기준으로 대상 농가 39,087호 중 30,088농가가 등록을 마쳐 77.0%를 달성하였다.

등록제의 도입 초기부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일부 축산단체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입장을 전환하기도 하는 등 이제는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축산업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추세대로 등록이 진행된다면 축산농가의 등록 마감 시한인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완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상농가 모두 등록을 완료하여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분기·월·일별로 축종별, 지역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하면서 부진사유 등을 점검·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다.

5. 이 제도와 관련한 농가의 주요 관심사항과 대책

축산업 등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축산단체 및 농가에서 등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농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등록대상 가축사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소”의 경우 당초 100㎡ 이상을 3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요구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축산농가의 여건상 등록마감 기한내에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등록제 시행기간을 2010년까지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농가의 주장과 관련한 것이다.

축산업 등록제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동방역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친환경축산 등 선진축산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축산법 개정과정에서 낙농가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소독설비 및 분뇨처리시설 등의 등록기준이 제외되었으므로 2010년까지 시행유예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등록시 무허가 축사현황이 노출되어 타법의 제재로 인한 범법자 양상이 우려되므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

무허가 축사에 관해서는 지난 1992년에 6개 부처가 숙의한 결과 적법하게 보완이 가능한 축사에 한해 추진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받은 농가와 의 형평성 문제, 또 다른 무허가 축사 난립문제 등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무허가 축사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라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두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확보로 경영 악화에 따른 소득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육시설 면적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가축질병 발생에 신속한 대처문제, 환경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도 이에 부응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두당 사육시설면적은 농가가 많이 활용하는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초로 현지 실태조사,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하여 고시(2004.3.17)한 것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앞으로 농가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미등록 등 법령위반사항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이 너무 무겁다는 지적도 있다.

미등록 농가에 대한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명의 대여시 영업정지 처분 및 축산업 등록자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은 등록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후 법 개정시 의견수렴을 거쳐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섯째, 일부농가는 또한 등록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이나 세제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방역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등록농가의 등록내용은 동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등록목적 이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이나 관리 지침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제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도 도축·출하실적, 사료거래 실적 및 납유실적 등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는 과세자료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으며,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원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6. 맺는말

축산업 등록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축방역, 안전성 관리, 친환경 축산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선진축산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필수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가 국내에 이제 막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축산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향하는 취지를 축산업계 모두가 인식하고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등록을 통해 입력된 자료를 다양한 축산정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기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사육규모별 가축사육 현황('05. 3)

구분	구분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및 사육두수(호, 두)						
		1~9두	10~19두	20~29두	30~39두	40~49두	50두이상	계
한육우	사육규모 구분	1~9두	10~19두	20~29두	30~39두	40~49두	50두이상	계
	농가수 (점두율)	153,898 (80.4%)	18,828 (9.8)	6,952 (3.6)	4,159 (2.2)	2,351 (1.2)	5,213 (2.7)	191,401 (100)
	사육두수 (점유율)	468,086 (28.3)	259,959 (15.7)	165,718 (10.0)	139,742 (8.4)	99,831 (6.0)	520,911 (31.5)	1,653,883 (100)
젖소	사육규모 구분	1~9두	10~19두	20~29두	30~39두	40~49두	50두이상	계
	농가수 (점두율)	393 (4.1)	616 (6.5)	1,031 (10.9)	1,393 (14.7)	1,545 (16.3)	4,506 (47.5)	9,484 (100)
	사육두수 (점유율)	2,041 (0.4)	9,134 (1.8)	25,175 (5.1)	47,812 (9.6)	68,378 (13.8)	344,066 (69.3)	496,606 (100)
돼지	사육규모 구분	1~49두	50~99	100~299	300~499	500~999	1천이상	계
	농가수 (점두율)	4,427 (36.2)	442 (3.6)	1,712 (14.0)	892 (7.3)	1,904 (15.6)	2,850 (23.3)	12,227 (100)
	사육두수 (점유율)	41,959 (0.5)	31,775 (0.4)	314,217 (3.6)	340,032 (3.8)	1,398,859 (15.8)	6,711,394 (75.9)	8,838,226 (100)
닭 (천수)	사육규모 구분	1~449수	500~999	1~2천수	2~3천	3~5천	5천이상	계
	농가수 (점두율)	118,693 (97.0)	54 (0.1)	103 (0.1)	90 (0.1)	134 (0.1)	3,270 (2.6)	122,344 (100)
	사육두수 (점유율)	872 (0.8)	31 (0.1)	148 (0.1)	201 (0.2)	516 (0.5)	107,898 (98.4)	109,666 (100)
오리 (천수)	사육규모 구분	1~449수	500~999	1~2천수	2~3천	3~5천	5천이상	계
	농가수 (점두율)	7,777 (91.9)	57 (0.7)	54 (0.6)	31 (0.4)	53 (0.6)	489 (5.8)	8,464 (100)
	사육두수 (점유율)	139 (1.5)	34 (0.4)	66 (0.7)	74 (0.8)	207 (2.3)	8,541 (94.3)	9,062 (100)